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간호학과 등의 편입학 정원 규정의 근거 마련 >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34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간호학과 등의 편입학 정원 규정의 근거 마련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언석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13.
3. 회부연월일 : 2025. 10.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입생 선발에 관한 근거를 두되, 구체적인 편입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학년별·모집단위별 총학생 수 기준 등 편입 형태에 따라 각각의 비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의료계에서는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방문간호사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대학별 학사편입 규모는 학년별·모집단위별 제한을 받는 등 간호학과 편입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인력확충의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년별·모집단위별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간호학과 등의 비율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간호학과 등의 편입학 정원 규정의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편입생 수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간호학과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편입학) (생략)	제23조의2(편입학) ①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가 선발할 수 있는 편입생의 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
	1. 학년별 총학생 수: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모집단위별 총학생 수: 해당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편입학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 인력이 쏠리면서 지방·중소병원은 간호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OECD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OECD 보건통계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간호인력 수는 인구 1,000명당 9.1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¹⁾

□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를 위하여 간호학과와 편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음.

□ 그런데 현행법 제23조의2에서는 편입생 선발에 대한 일반적 근거 조항만을 두고 있으며,²⁾ 구체적인 정원내·정원외 모집인원과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음.³⁾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편입생 정원 등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간호학과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적극적

1) 보건복지부,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8.

2) 「고등교육법」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 3. (생략)

3) <참고자료 1> 관련 규정

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되지 않는다면, 환자 사망률, 환자 감염 발생률이 증가하고 환자의 병원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증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가 필요하므로,⁴⁾

개정안이 적정한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의 안전 및 의료의 질을 보장하려 취지는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는 학년별·모집단위별 총학생 수 기준 등 편입형태에 따라 각각의 비율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편입학의 정원내·외 모집 여부, 전형 내용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편입생 수의 상한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 일례로 기존 법령상 모집인원의 제한이 없는 정원외 편입학 전형의 경우,⁵⁾ 해당 법안에 따라 규제가 신설됨으로써 편입학 정원에 제한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음.

4) 서울대병원뉴스, 「서울대학교병원, 중증희귀난치복합질환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 2020.10.22.

5) 순수외국인, 외국 학교 졸업 재외국민·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만학도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또한,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⁶⁾에 따라 간호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결정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하여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직접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편입학 비율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간호인력 양성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3년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현황을 살펴보면, 모집인원에 비해 등록인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정원을 증가시킬 필요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현황]

연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모집 및 등록 현황					
	대학			전문대학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2022	847명	754명	89.0%	247명	222명	89.9%
2023	828명	678명	81.9%	289명	236명	81.7%
2024	837명	618명	73.8%	281명	216명	76.9%

자료: 대학알리미

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일률적으로 편입생 수의 상한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기존 편입학 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상한 확대는 2018년 당시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현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⁷⁾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에서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편입학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재량권을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인력의 적정 수급 정책을 마련하여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현행의 체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대한간호협회 등에서는 지속적인 입학정원의 증가로 인해 이미 임상실습 인프라 부족 등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편입학 정원이 증가할 경우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한 간호교육의 질 저하 및 임상실습 환경 악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교육 및 실습 환경의 질 저하는 결국 간호사의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

7) 간호학과 학사편입학은 간호학과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0%(기존 10%)까지 모집 가능(2019~2028학년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등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다만,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 및 전문대학의 학과 등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등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5. 삭제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8.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10. 삭제

11. 의료인력(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 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등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등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12.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12의2.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13. 법 제50조의2 및 제54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일 것

가)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기간으로서 해당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나)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직전 학기의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다)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5. 소속 학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사람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

나.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폐쇄

다. 「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교법인의 파산

16.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과의 폐지에 따라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③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등을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⑥ 제2항제14호다목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의 폐지로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